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회부경위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8. 9. 9 평창군수(내무과장)

나. 회부일자 : 1998. 9. 15

다. 상정일자 : 1998. 9. 16 제59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 
제2차 본회의

### 2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(대통령령)개정 내용중 “지방의회의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,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처장 또는 의회사무국장, 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” 라고 되어 있고, ‘98년도 조직개편으로 제제가 폐지됨에 따라 평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를 이에 부합되게 하려는 것임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“의회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사무과장과 직원을 두며,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”는 규정을 “의회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사무과장, 전문위원, 직원을 두며, 사무과장과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”로 조정
- 나. “사무과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”는 규정을 “전문위원은 의회사무의 처리에 있어서는 의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과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”로 조정

### 4. 검토의견
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(대통령령)의 개정내용중 지방의회의 전문위원에 대한 지휘관계를 명문화 시켜 지방의회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.
- 기타 자구 및 내용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.